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22호 2014. 4. 25. (금)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71호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정선군 조례 제2372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12
- 정선군 조례 제2373호 정선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정선군 조례 제2374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정선군 조례 제2375호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 ..... 39
- 정선군 조례 제2376호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 41
- 정선군 조례 제2377호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인

2014년 4월 25일

정선군 조례 제2371호

###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세 미만의 취학전”을 “6세 미만의 취학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호, 양육”을 “보호·양육”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이란”을 ““어린이집”이란 정선군에 위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를 ““보육교직원”이란”으로, “보육 시설의 관리 운영”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을 “직원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군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4조 중 “군수는”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로,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 평가사항”을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호 중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그밖에”를 “그 밖”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없게 될”을 “없게 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의 제목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설치)”를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립보육시설(이하“보육시설”이라 한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운영위탁)”을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선군내 사무소”를 “정선군 관내에 사무소”로, “정선군내”를 각각 “정선군”으로, “위탁운영 할”을 “위탁하여 운영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운영위탁”을 “위탁하여 운영”으로,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보육시설”을 “사람이 직접 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을 “공립어린이집을”로,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보육시설 위탁증서”를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공립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제4항 중 “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공립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시설운영위원회(이하”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로, “이내에서”를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어린이집 원장

제15조제1항제3호 중 “보호자”를 “학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가”를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7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 중 “만료 기간”을 “만료”로, “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의 고용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운영위탁의 취소)”를“(위탁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에 의한”을 “한다)제25조에 따른”으로, “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위”를 “수탁자가 허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할”을 “수탁자가 운영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를 “수탁자가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로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하고,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정선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0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을 “범위에서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운영”을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시설 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으로 본다.

제4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공립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본다.

[별표]

## 정선군 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정선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4길 8
사북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2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1-5
사북해마루어린이집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8

[별지 제1호서식]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 집의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 집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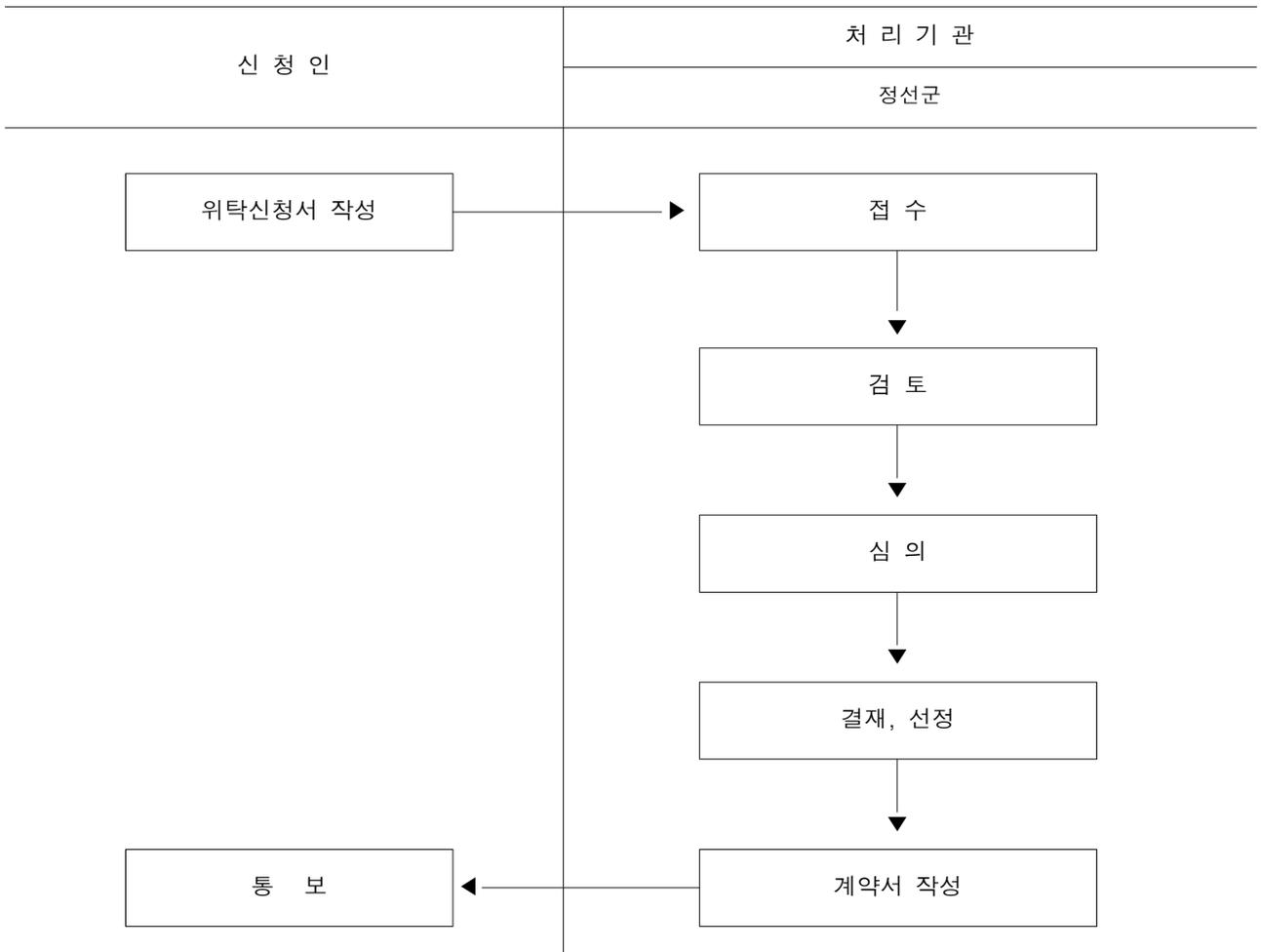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 명 칭:
- 소 재 지:
- 법인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 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
- 위 탁 기 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공립어린이집의 위탁방법·위탁기관·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 정선군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5조)
-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방법 변경(안 제14조)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인

2014년 4월 25일

정선군 조례 제2372호

###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의 방범활동을 통한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  
립되고 자율방범활동(이하 “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조직  
나. 각 읍·면별 봉사의식이 투철한 주민으로 구성되어 「강원지방경찰청 자율  
방범대 관리규정」에 따라 정선경찰서와 그 관할 지구대·파출소 및 치  
안센터에서 관리하는 조직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 라 한다)”란 각 방범대장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  
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 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범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방범대는 충실한 활동으로 군의 지원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차량구입 및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

2. 초소 설치 및 그 내부 환경개선비
3. 방법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체육대회 경비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다음연도 지원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
  - ③ 방법대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를 제5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관리·감독은 방법대장의 책임으로 본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라 군에 등록하고 1년 이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대로 한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와 미아 및 가출인 보호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방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연합대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활동실적을 기록·보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 주관
  2. 읍·면 방법대의 활동 지원·지도

**제6조(등록)** ① 제4조에 따라 경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법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법대 등록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방법대 및 정선경찰서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방법대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법대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방법대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제5조제1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방법대 및 정선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경비사용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읍·면 행정구역과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구역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방법대의 그 사용 및 활동실적을 해

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읍·면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방법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방법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표창)**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대원에게 「정  
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방법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  
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활동하고 있는 방법대와 연합대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방법대와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  
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 (                    )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법대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순찰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축산	자영업	회사원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 5. 장비보유현황

#### 가. 방법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m <sup>2</sup> )	설치재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나.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 )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제 정 이 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읍·면별 기 조직되어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 주민보호를 위한 자율방범대의 역할 및 신규 설립·등록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기초 질서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규정(안 제4조)
-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대상 규정(안 제5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14년 4월 25일

정선군 조례 제2373호

정선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포상조례”를 “정선군 포상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기관 또는 단체
- 3. 공무원
-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군 외의 거주자 또는 기관·단체

제3조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술선수범한자”를 “술선수범자”로,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6조 중 “단체”를 “기관·단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의 실·과장 또는 산하기관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 게 상신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20인”을 “20명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연입상 등”을 “경연입상 등”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를 “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공적심사위원회)”를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 및 서면심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하여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포상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서면심사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 위원장의 직무 규정 신설(안 제10조제5항)
-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신설(안 제10조제6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인

2014년 4월 25일

정선군 조례 제2374호

###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지정에 관하여”를 “지정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을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가”를 “해당 읍·면장이”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6조에 따른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으로,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항의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천만원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천만원이하 재산의”를 “5천만원 이하 재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장”을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대장(전산자료를 포함한다)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를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제7조제2항제4호 중 “있는지의 여부”를 “있는지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설치 여부”를 “설치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를 “실태조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관리대장”으로, “대부시”를 “대부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토지안”을 “토지 안”으로 한다.

제9조 중 “가져 올”을 “가져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유재산”을 “군수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1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정선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부지와 동”을 “부지와 같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를 “영 제17조에 따르며”로, “하되”를 각각 “하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당해재산”을 “해당 재산”으로, “허가시”를 “허가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20조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장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로, “영 제12조제2항 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을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를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제2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배분 할”을 “배분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를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24조 내지 제36조”를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를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6조의 제목“(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을“(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등”이라 한다)”를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40이상”을 “4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을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개발사업시행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대부”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창업자”를 “벤처기업 창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인  
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제27조제4항제6호 중 “지역내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지역에서 종업원 50명 이상”으로,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를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으로, “신축하는 때”를 “신축하는 경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제29조제4항 중 “관련단체 및 조합”을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생산비등을”을 “생산비 등을”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산출(이하 같다)”을 “산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층건물”을 “2층 건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층이상”을 “3층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4층이상”을 “4층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지하1층”을 “지하 1층”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하2층”을 “지하 2층”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하3층이하”를 “지하 3층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지하1층”을 “지하 1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하2층”을 “지하 2층”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하3층이하”를 “지하 3층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분적은 대

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제30조제5항 전단 중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로,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제31조제1항제1호나목 중 “2천만달러이상인”을 “2천만달러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중 “50퍼센트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을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제31조제1항제2호다목 중 “50퍼센트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으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을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제31조제1항제3호다목 중 “50퍼센트이상”을 각각 “50퍼센트 이상”으로,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미만”을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0조제2항에 규정”을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 제30조제2항에서 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 군수가”로, “필요하다고 군수가”를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 금고”를 “정선군 금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을 “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을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으로,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대부료등의 납기)”를“(대부료등의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납부기간은 최초년도”를“납부기한은 최초연도”로,“하되”를“하되, 사용개시일이”로,“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을“60일 이내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으로,“30일이전으로”를“30일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50만원”을“100만원”으로,“3월이내”를“3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100만원”을“200만원”으로,“6월이내”를“6월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200만원”을“300만원”으로,“9월이내”를“9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를“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로,“납부기간”을“납부기한”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정리부에는 다음 각호”를“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재산을”을“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제37조제1항제4호 중“400제곱미터이하”를“4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를“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로,“10년이내”를“10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5년이내”를“5년 이내”로,“각호”를“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20년이내”를 “20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규정”을 “어느 하나”로, “20년이내”를 “20년 이내”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에 따라”로,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에 따라”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국가산업단지내”를 “국가산업단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제38조제3호 중 “투자지역내”를 “투자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용지내”를 “용지 내”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다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때로서”를 “때”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3,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으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를 “건물이”로,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을 “같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다만)으로, “한정한다) 동”을 “한정한다) 이내에서 그”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를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으로, “매각범위 내”를 “매각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군과 군”으로, “지방자치단체가”를 “군이”로, “지방자치단체이외”를 “군 이외”로, “50%이상이어야”를 “50퍼센트 이상이어야”로 한다.

제40조 중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8조에 따라”로,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을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으로 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8조의3 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평가결과”를 “그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군청사 신축시”를 “군청사를 신축할 경우 그”로,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를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 본문 중 “3배이상”을 “3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곤란한”을 “곤란할”로,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이상”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를 “제1항에 따라 별표에 정하지”로, “지방청사의 신축시”를 “지방청사를 신축할 경우”로, “대하여는 별표상”을 “대해서는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축시”를 “신축할 경우”로,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을 “제1항에 따른 별표”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 주차장은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8,385㎡
2. 군수 집무실: 99㎡
3. 의회 청사: 1,506㎡

제47조의 제목“(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건축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강원도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종합 청사화”를 “종합청사화”로 한다.

제49조 중 “조례에서“관사”라 함은”을 “조례에서 “관사”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0조제3호 중 “시설관리사·기타”를 “시설관리사·그 밖의”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각 호의사항”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카텐”을 “커튼”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54조의 규정”을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관사운영비중”을 “관사운영비 중”으로, “공무원에게 다음”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 중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를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를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변상금의 분할 납부)”를 “(변상금의 분할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100만원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제62조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를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를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5상당액”을 “5 상당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인 이상인”을 “2명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4조 중 “공유재산중”을 “공유재산 중”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유 지분비율”을 “소유 지분 비율”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 중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대하여는”를 “대해서는”로 한다.

제67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

##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조항 조례 반영 및 모호한 문구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점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혼선 예방 및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용·대부료의 분납 이자율을 확정

##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 및 모호한 문구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변경(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21조, 안 제31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점의 구체화 (안 제11조)
-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 상향조정 및 분납 이자율 조정 (안 제34조, 제62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완화 (안 제39조)
- 군 본청·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의 면적기준 신설(안 제46조의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14년 4월 25일

정선군 조례 제2375호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 지 이 유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는 제도의 조기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14년 4월 25일

정선군 조례 제2376호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인

2014년 4월 25일

정선군 조례 제2377호

###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타”를 “다른”으로, “영업, 밤샘주차행위:”를 “영업:”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른 지역택시 밤샘주차행위: 2만원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시”를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으로, “처리결과”를 “그 처리결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징금 등 이상) 또는 정선군의 과태료 등 처분이”를 “과징금, 검사의 약식

명령 청구 및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의 처분결정을 말한다. 제3항에서도 같다) 이”로, “날로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의하여”를 “날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처분결정서(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찰청의 구약식 처분 등 이상)”를 “처분결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범위반”을 “범위반”으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2013년 조례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포상금액의 일부 조정 (안 제2조)
  - 다른 지역택시 밤샘주차 행위의 경우 포상금 3만원을 2만원으로 하향 조정
- 포상금 지급근거인 처분결정서의 범위 일부조정 (안 제6조)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인정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정비